



정책/제도

지재위, 2020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개 요

-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는 국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수행한 정부의 집행 이력을 돌아보기 위해 관련 통계자료의 정리,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호정책과 집행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기 위함
- 금 회차 보고서에는 해외에서 발간하는 주요 국제지식재산 보호지수까지 검토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향후 정책제언 마련의 토대를 세우고자 함

□ 2020년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 환경

- (미국·중국) 무역전쟁에 대해 2020년 1월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고 2월 14일부터 발효함. 동 합의문은 ①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②손해배상범위 및 처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미국) 2020년 1월 29일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협정(USMCA)에 서명함. 동 협정은 ①저작권 및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②영업비밀의 민·형사 책임 강화 등이 지식재산 관련 주요 내용임
- (일본) 디자인법을 개정하고 2020년 4월 1일 발효함. 동 법은 ①물품에 기록·표시되지 않는 이미지와 건축물의 외관·실내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 ②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중국) 2020년 10월 17일 개정된 특허법이 통과됨. 이는 12년 만의 전면 개정이며 ①고의적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금을 확정 가능,

②법정 손해배상금의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EU) 2020년 1월 31일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탈퇴와 브렉시트의 선언으로 영국은 EU의 지식재산 시스템에서 분리됨.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를 두어 지금까지의 시스템을 유지함

□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 보호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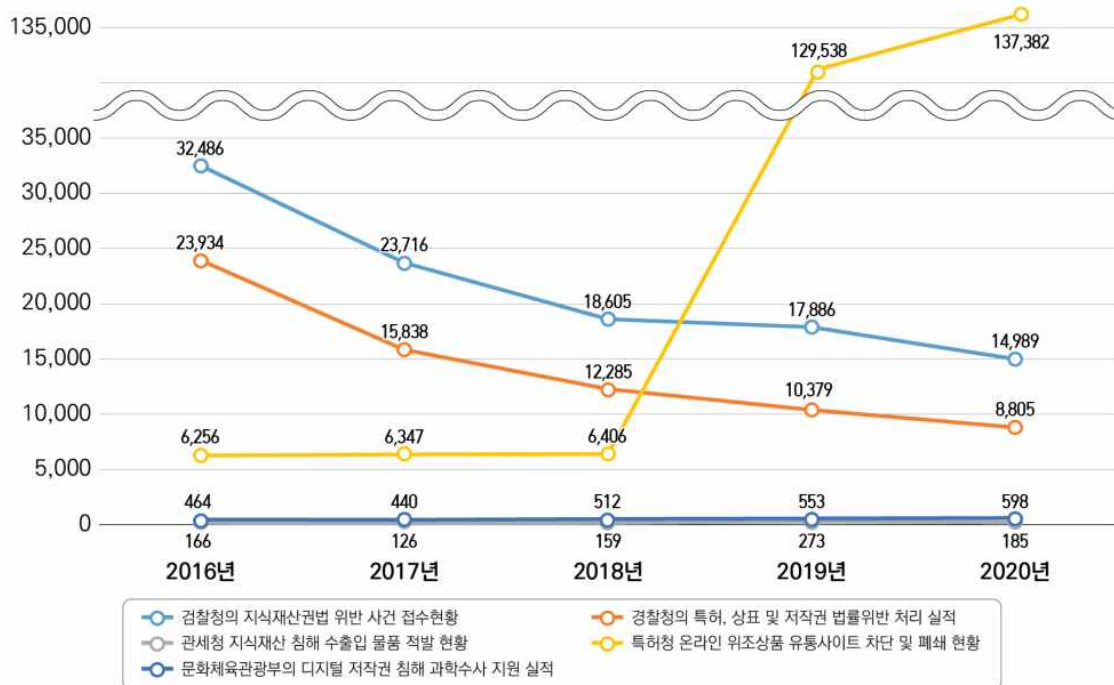
- (국제지식재산 보호 순위)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갈음해 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로, 2020년 우리나라는 국제경영개발원(IMD) 지식재산 보호 지수에서 63개국 중 38위,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IPC) 보호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분석대상 53개국 중 13위로 나타남

□ 2020년 지식재산 보호 집행 성과

- (법체계 정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 (특허법) 특허 또는 전용 실시권 침해에 대해 기존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기존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 한도 내로 산정되던 손해배상액 방법을 생산 능력을 초과한 부분까지 추가 배상토록 변경(2020년 1월 20일 시행)
 - (상표법·디자인보호법) 특허와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먼저 도입된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를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2020년 1월 20일 시행)
 - (상표법)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2020년 1월 20일 시행)
 - (저작권법) 잘못 등록된 저작권 직권 등록 말소 제도 및 저작권 분쟁조정제 직권조정 결정제도 도입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활용되는 교과용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20년 8월 5일 시행)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 등의 조치 필요(2020년 2월 21일 시행)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관련 위증죄와 거짓표시죄에 대해 벌칙과 벌금 상향(2020년 6월 11일 시행)
- (단속실적)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 사범 단속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상황 파악 및 제재
 - (검찰청) 지식재산권법 위반 사건을 14,989건 접수하고 14,720 처리
 - (경찰청)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법률위반 사건을 총 8,805건 처리
 - (관세청) 156건의 상표권 침해 물품과 등 총 185건의 지식재산 침해 수출입 물품 적발
 - (특허청) 온라인 조사를 통해 137,382건의 위조상품 유통 사이트를 차단·폐쇄
 - (문화체육관광부) 598건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애니24’, ‘토렌트큰’ 등 주요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폐쇄
- 이러한 주요 실적을 2019년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사건은 소폭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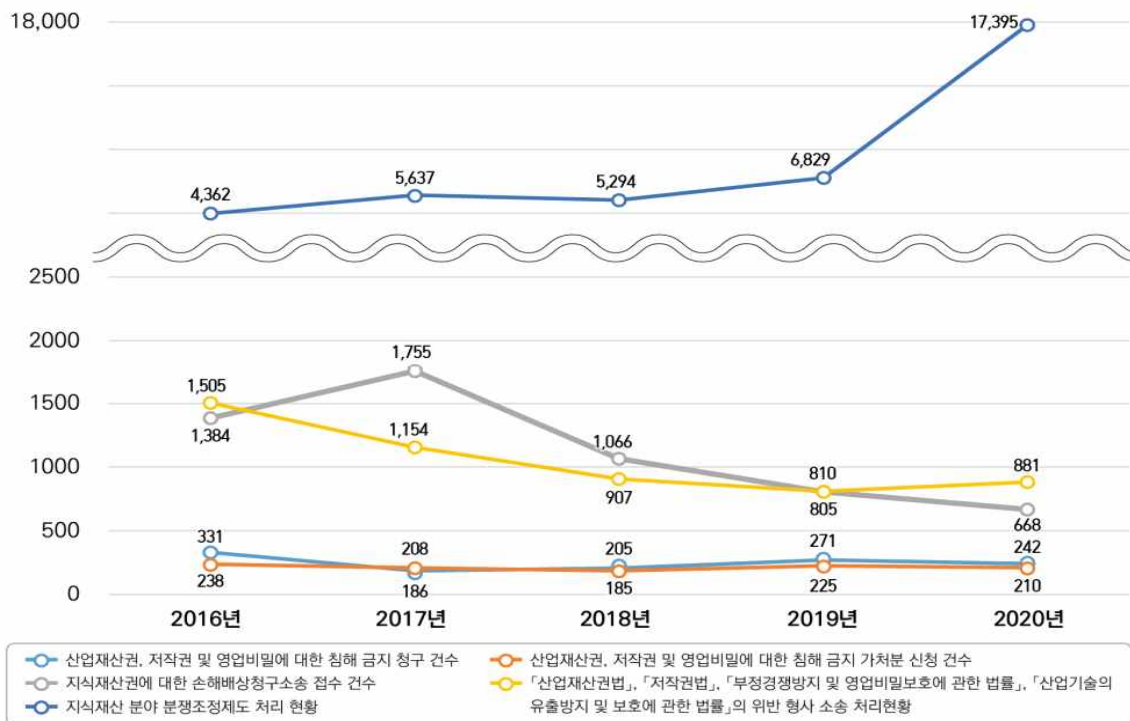
〈 2016~2020년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 사범 단속 현황(건) 〉



출처: 각 부처 통계자료

- (분쟁해결) 민사적 구제조치, 형사적 제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
 - (민사)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242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210건 접수
 - (민사) 산업재산권, 품종보호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668건 접수
 - (형사)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 형사 소송 881명 처리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총 17,395건 처리
 - 2020년도 분쟁 접수 및 처리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민사를 이용한 분쟁 신청은 감소하였고, 형사 소송 및 분쟁조정제도의 활용이 증가함

〈 2016~2020년 주요 지식재산 분쟁 접수 및 처리 현황 〉



출처 : 각 부처 통계자료

-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계부처와 해외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IP 보호를 도모

- (현지 대응체계 확대)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강화를 위해 마닐라에 해외지식재산센터 신규 개소
- (상표 브로커 대응) 중국 상표 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 당한 225개의 우리기업 지원
- (해외 위조상품 침해 대응) 중국과 아세안의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하여 165,460건의 게시물 삭제
-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우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해외 사이트 2,457건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저작권이 빈번하게 침해되는 5개국(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74,363건의 불법 URL 삭제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보호·보안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업 기술보호에 필요한 국가별 기술보호지침 제작
- (존중문화 확산) 각 부처별로 다양한 홍보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특허청) 전국 순회 캠페인 16회, 국민 참여 지식재산 보호 공모전 10회, 공익광고 제작 및 145회 송출 등 홍보하고, 지식재산일반 선도 고등학교 선정·운영 및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교과과정 개설
 -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5회,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저작권 정기캠페인 18회, 홍보영상 제작 및 약 525만회 송출하고, 교사, 학생, 성인 및 문화예술인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기획하여 전문강좌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 설명회 개최 및 제공

□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 최근 5년간 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하여,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는 증가 추세
 - 더욱이 4차 산업혁명기술 발전을 통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바,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식재산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확대
 - 2019년 3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기존 상표에서 특허, 영업비밀 등으로 확대하고 정착된 결과 2020년 단속실적이 전년 대비 72% 증가
 - 영업비밀누설 등의 죄명으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율은 2016년~2019년 평균 7.8%였는데 반하여 2020년 14.1%로 급증한바,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확대 필요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2020년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민사본안(1심) 평균 처리일수 510.5일, 최근 5년 평균은 494.5일로 소송을 통한 지식재산 분쟁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신청 건수는 2015년~ 2019년까지 14.2%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20년은 전년 대비 154.7% 증가
 - 이렇게 급증하는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위원 및 조정담당관 등에게 전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신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통한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보호 순위 개선
 - 2020년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보호 순위는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하는 GIPC 지수에서는 13위(2019년 13위)를 기록하였으나, 경영자 등의 설문조사로 산출하는 IMD 지수에서는 38위(2019년 37위)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특허 및 상표 등의 고의침해에 최대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경영자 등의 인식은 개선되지 않음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영자 등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우리나라 국제지식재산보호 순위 개선 필요

참고자료

- 지식재산위원회, 2020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2021. 12. 31.>

https://ipkorea.go.kr/information/reference_list.do

- 주요 언론 보도자료

<https://www.news1.kr/articles/?4539208>

<http://www.it-b.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01>

정책/제도

공공소프트웨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개요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를 위해 과기부 주관으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
 -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분석 프로그램과 같은 공공소프트웨어 구축 사업에 있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등, 기존의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공공기관과 IT대기업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민간이 수동적인 용역사업자가 아닌 주도적인 사업추진 주체로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방식

■ 현행 추진방식

- 민간이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하여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최초로 사업을 제안한 기업은 선정평가 시 5점 이내(총 100점)의 가점을 부여
- 기업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료와 유사한 성격의 사용료(운영·유지비)를 지급받거나 이용자로부터 이용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
-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만큼 발주기관과 기업 간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 (기대효과) 제도를 통해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 ①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 기획, ②대규모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서비스의 조기 구축, ③장기적인 수익 사업 제공으로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기술 혁신 유인 등의 긍정적 효과 유발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유형

< 유형 구분 >

	민간제안	공공주도
개발형	(유형1) 민간제안 개발형 - 민간의 사업계획 제안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민자 50% 이상) 추진 ※ 최초제안자에 대해서는 기술성평가 시 최대 5점 가산	(유형2) 공공주도 개발형 - 공공이 사업을 계획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민자 50% 이상) 추진
구매형	(유형3) 구매형 - 민간에서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면서 사용료 지급 ※ 구매형의 경우 민간제안과 공공주도를 구분할 실익이 적음	

< 유형별 사업 방식 >

- (유형1) 발주기관의 업무체계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공동소유 또는 공공기관 소유)하고, '공공으로부터의 운영·유지비'(임차료 유사) 또는 '민간이용자로부터의 이용료'로 수익 창출
 - ※ 민간의 제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실익이 없음
 - ※ BTO, BTL 방식을 일부 차용하되, 소프트웨어사업에 적합한 수익 창출 방식 계획 중
- (유형2) 공공이 직접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유형1과 동일
- (유형3) 클라우드 서비스 구매를 포함하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거치는 경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자동 인정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외의 추진 절차*도 검토 중
 - * (구매조건부 협약) 복수 발주기관과 기업 간 구매 협약 체결 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은 기업에서 소유하되 각 기관에서는 서비스에 관한 사용료 지급

■ 주요 논의사항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절차·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안내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가이드라인) 1.0」을 '22. 1월 중 배포할 예정
- 향후 선도사례 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지침(가이드라인) 2.0」으로 보완 배포 계획

- (대상) 현행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이 주요 대상이나, 넓게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기반시설(장비, 건물 등)까지 포함
 - ※ 사업의 대상이 사회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경우 「민간투자법」 적용에 따른 이점과 「소프트웨어진흥법」 적용에 따른 이점을 비교하여 민간이 적용 법령 선택
- (요건·정의) △국민생활 편의 증진, △민간 자본·기술 활용(민간 소프트웨어 이용 또는 민간 투자 비중 50% 이상), △민간·공공 협력(사용료, 운영방식 협약 등)
 - ※ 과기정통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고시
- (도입취지) 하드웨어 등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적용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의 추진에 한계
 - △민간의 위험 분담을 통한 창의 발휘 유도, △민간의 기존 데이터센터, 장비 등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대기업 참여제한 등 예외
- (전문기관) NIA 정보통신기술투자성과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사업계획 검토, 사업자 선정평가 대행, 사업계획 컨설팅* 등을 수행
 - * 제도가 정착하기 전까지 검토기관인 NIA에서 사업계획 컨설팅 등 병행
- (예산편성) NIA의 사업계획서 평가검토 및 과기정통부의 인정·고시 결과를 첨부한 예산 심의자료를 기재부에 제출
- (제3자 공고 및 선정평가) 제3자 공고에 따라 최초제안자가 아닌 사업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해당 사업계획서에 대해 발주기관이 자체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인 NIA에 평가대행을 의뢰

■ 향후계획

- (‘21.12.29.)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동 토론회에서 지침(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소개
- (‘21.12월4주~‘22.1월3주) 수발주자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 「예산편성지침」 개정 관련 기재부 협의 병행
- (‘22.1월4주) 지침(가이드라인) 배포

참고자료

- 과기정통부, 공공소프트웨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2021. 12. 29.>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3181240>
- 주요 언론 보도자료
<https://zdnet.co.kr/view/?no=20211229134431>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61>
<https://www.etnews.com/20211221000054>

해외동향

월 1회(매 10일) 제공

이탈리아 베니스 법원, 최초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보호 명령

■ 개요

- 2021년 12월 13일, 이탈리아 베니스 법원은 GNU GPL v3 license*를 적용받는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위반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판결을 판시함
 - * 2007년 6월 29일,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의 GNU 프로젝트에 의해 배포되며 GNU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체계로, 라이선스 사용료나 사용상의 제약 조건을 자유롭게 하여 소프트웨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GNU 소프트웨어로 공개되는 원시 부호는 누구나 변경 또는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로 재배포하고, 상업적 이용 가능하지만, 저작권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GPL의 기본 원칙과 공개하는 측이 정의한 바를 충실하게 따르도록 되어 있는 라이선스
- 법원은 프리 소프트웨어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지만, 배포자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침해 코드를 즉시 제거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관한 현행법을 적용하여 자체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동 결정을 발표하도록 판시하였음

■ 주요내용

1. 사실관계

- 동 사건은 웹사이트 제작 SW WordPress의 페이지 빌더 Elementor 플러그인 중 하나인 Dynamic.ooo - Dynamic Content for Elementor*을 소유하고 있는 Ovation S.r.l.사가 제기한 사건임
 - * Dynamic.oo - Dynamic Content for Elementor는 WordPress를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 빌더인 Elementor 플러그인 중 하나
- GNU GPL v3 라이선스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동 회사는 Dynamic.ooo의 개발팀에서 근무하던 2명의 전직 개발자들이 설립한 Nerds Farm S.r.l.사가 Dynamic.ooo 코드를 활용하여 만들어서 재배포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 위반이 발생함
- 피고(Marco Pogle, Francesco Pesce and Nerds Farm S.r.l.)는 Dynamic.ooo의 콘텐츠를 라이선스 규정에 적절하게 제작하였지만 코드를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 변경 사항을 나열하지 않고 원래 권리자를 언급하지 않아 라이선스를 위반함
- 이러한 라이선스 위반에 대해 원고 측은 피고 측에 라이선스에 기반한 권리인

종료(Termination)*를 통지하였지만, 피고 측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함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PLv3) 8. Termination.

2. 법원의 명령

- 법원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지만 배포자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피고에게 침해 코드를 즉시 제거하고, SW 저작권 보호에 관한 현행법을 적용하여 자체 웹사이트 및 SNS 플랫폼에 동 결정을 발표하라고 명령하였음
- 법원의 명령은 다음과 같음
 - 조치 통지 후 7일 이내에 피고가 작성한 Elementor용 Dynamic Content 1.9.5.2 버전, sub doc.2에 포함된 모든 재귀코드(최대 500줄 예외)를 제거하거나, E-addons for Elementor 라는 소프트웨어의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용을 중지할 것
 - 조치 통지 후 15일까지 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매일 100유로(각 침해자별) 벌금, 조치 통지 후 15일 이후에는 매일 300유로 벌금이 부과
 - 동 통지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비용으로 자체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일반 문자 2배 크기로 게시할 것
 - 배상금 5,000유로, 지출금 545유로, 일반 비용의 15%를 피고의 부담으로 함

■ 시사점

- 동 판결의 의의는 이탈리아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법적 가치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으로서, ‘Free’가 라이선스 조건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판결
-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 산업에 걸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활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정책 지원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 및 검증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라이선스 위반 검증이나 검토가 가능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많은 영역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불가분의 역할을 함에 따라 관련 라이선스의 검토 및 관리가 필수인 시대임

참고자료

<https://www.dynamic.ooo/press/groundbreaking-acknowledgment-of-free-software-in-italy/#>

<http://ifthisbetreason.com/2021/12/italian-courts-find-open-source-software-terms-enforceable/>

<https://droit.developpez.com/actu/329828/Les-tribunaux-italiens-considerent-que-les-clauses-des-logiciels-libres-sont-applicables-et-condamnent-deux-developpeurs-pour-non-conformite-a-la-GPL/>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일,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2-2호> 발간일은 1월 25일입니다.